

제5회 정기노회

요 약

주제: “박넝쿨이냐? 생명이냐?”(욘4:9~11)



- 일 자 : 2019년 10월 14일(월)-15일(화)
- 장 소 : 큰숲교회당 (이준성 목사 시무)
경기도 시흥시 봉화로 321-1(☎ 031-499-1004)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중부노회**

경기중부노회 제5회 정기회 요약
(직인 생략)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노회 산하 개체교회와 노회원들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제5회 경기중부노회 정기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요약을 송부합니다.

1. 기본사항

- 일시: 2019년 10월 14일(월) 오후 7시-15일(화) 오후 5시 15분
- 장소: 큰숲교회당 (이준성목사 시무 - 경기도 시흥시 봉화로 321-1)
- 주제: “박녕쿨이나? 생명이냐?”(욘4:9-11)
- 출석: 첫째날 목사회원 93명, 장로총대 39명 합계 132명
 둘째날 목사회원 66명, 장로총대 21명 합계 87명

2. 개회예배

사회: 신동섭 목사(노회장)
기도: 박갑봉 장로(부노회장)
성경봉독: 이근행 목사(부서기)
설교: 이준성 목사(부노회장)
제목: “박녕쿨이나? 생명이냐?”(욘4:9-11)
성찬식: 이준성 목사(부노회장)
축도: 신동섭 목사(노회장)

3. 노회원 명단

목사 회원 (130명)

1) 담임목사 (58)

정진철 윤광중 정권준 김홍석 이성용 이영근 전종철 박성덕 김성규 천재석
조원근 김동식 정군효 박승하 김실구 이동준 이준성 강대수 박흥대 추경호
김수구 한금석 김광섭 박충성 이성열 장정복 이근행 김석률 김의겸 김용희
방석진 송재홍 신동섭 이성일 김성은 임재호 임은택 강태원 정성구 김생중
진경신 김세용 이수영 최경훈 임경호 정철기 정성훈 이종문 최경선 최민호
박성산 김정남 한성훈 안영기 송태성 정중현 이명진 김영규

2) 부목사 (21)

이장우 유신권 이성구 이현규 오인우 유대식 정화준 이세훈 김원재 이병철
이창훈 여진호 김원배 정종구 김태균 박민수 김정웅 권혁민 장신규 장세용
이영호

3) 기관 및 전도목사 (6)
신원하 최정기 박신웅 김훈연 국중근 유모세

4) 선교사 (13)
임성용 박종덕 김선식 신사범 송호완 현 준 최원근 정양오 성충경 은희봉
양창모 박현감 신동호

5) 무임목사 (15)
이은표 박진현 곽대영 황동현 윤승곤 황성수 지완훈 박창현 박요한 이승민
최원재 전성인 정주현 박성영 박요섭

6) 원로 및 은퇴목사 (15)
최병학 최정래 정강화 윤우영 오순동 임인혁 김상수 이광현 이상기 김정삼
박승용 김용출 강연형 강호산 정병일

7) 준회원 (2)
최승혁 김일화

장로 총대 (42명)

이광연 이승열 조철형 김창희 이명호 김석희 조남창 허명호 임현준 신성태
전덕수 허창범 김종철 이규남 박성순 백종규 김영훈 박영규 홍주희 이삼권
한영호 안정환 이강열 고동영 정연배 손경모 김충무 박갑봉 장경식 이종훈
유철선 이홍섭 임상열 정종원 임학모 박동언 권석희 윤운섭 박성열 홍태표
김인수 김문형

4. 노회 임원 및 감사

노 회 장 : 이준성 목사
부노회장 : 김동식 목사 허창범 장로
서 기 : 이근행 목사
부 서 기 : 이성일 목사
회록서기 : 송재홍 목사
부회록서기 : 김성은 목사
회 계 : 정종원 장로
부 회 계 : 이광연 장로
감 사 : 신동섭 목사 박갑봉 장로

5. 시찰별 회원 및 총대 명단

구 분	직분	이 름
동 부	목사	정진철 정철기 신동섭 방석진 임재호 정균효 김홍석 정성구 이종문 이성용 오인우 유신권 이성구 정종구 김원재 권혁민 장세용 이영호
	장로	임상열 정종원 임학모 박동언 권석희 윤운섭 박성열 홍대표 유철선 이홍섭 손경모 김충무 김인수 김문형
서 부	목사	임은택 김성은 송재홍 최민호 윤광중 김실구 최경훈 박충성 진경신 이영근 김세용 김석률 김동식 이현규 유대식 이세훈 김태균 박민수 정화준 여진호 장신규
	장로	신성태 전덕수 허창범 김종철 이규남 박성순 조남창 허명호 백종규 임현준 김영훈
수 원	목사	이성열 정중현 강태원 김성규 안영기 한성훈 이성일 이수영 강대수 한금석 이명진 김광섭 김의겸 박성산
	장로	장경식 박갑봉 이종훈
시 흥	목사	박승하 임경호 전종철 이근행 정성훈 김용희 김생중 최경선 김정남 천재석 이준성 이창훈 이병철 김정웅 김원배
	장로	정연배 고동영 이강열 안정환 한영호 홍주희 이삼권 박영규
안 산	목사	정권준 조원근 장정복 박흥대 송태성 박성덕 추경호 김수구 이동준 이장우 김영규
	장로	김석희 이명호 이광연 이승열 김창희 조철형
기 관	목사	신원하 최정기 박신웅 김훈연 국중근 유모세
선교사	목사	(KPM)임성용 박종덕 김선식 신사범 송호완 (노회)현 준 최원근 정양오 성충경 은희봉 양창모 박현감 신동호
무 임	목사	이은표 박진현 광대영 황동현 윤승근 황성수 지완훈 이승민 박창현 박요한 최원재 전성인 정주현 박요섭 박성영
원로.은퇴	목사	최병학 최정래 정강화 윤우영 오순동 임인혁 김상수 이광현 이상기 김정삼 박승용 김용출 강연형 강호산 정병일
준회원	목사	최승혁 김일화

6. 상비부

1) 교육부

부장: 이성열목사 서기: 안영기목사 회계: 백종규장로
3년조: 이성용목사 박흥대목사 정철기목사 유신권목사 이창훈목사
오인우목사 장신규목사 이광연장로 정종원장로 김문형장로
2년조: 이성열목사 김세용목사 안영기목사 박신웅목사 이성구목사
박영규장로 이강열장로
1년조: 송재홍목사 임은택목사 정중현목사 백종규장로 유철선장로
김석희장로

2) 사회복지부

부장: 박성덕목사 서기: 진경신목사 회계: 신성태장로
3년조: 박성덕목사 한성훈목사 정성구목사 이명진목사 김태균목사
장세용목사 김영규목사 신성태장로 박성순장로 김인수장로
2년조: 송태성목사 진경신목사 김영훈장로 김창희장로 조철형장로
김종철장로
1년조: 이근행목사 정성훈목사 권석희장로 안정환장로 홍주희장로
허창범장로

3) 선교부

부장: 장정복목사 서기: 김생중목사 회계: 박성열장로
3년조: 최정기목사 장정복목사 임경호목사 정화준목사 권혁민목사
이영호목사 임학모장로 손경모장로
2년조: 김홍석목사 김생중목사 김용희목사 정종구목사 이승열장로
이홍섭장로 박성열장로
1년조: 추경호목사 김원배목사 이준성목사 최민호목사 박성산목사
허명호장로 홍대표장로

4) 신학부

부장: 정군효목사 서기: 김석률목사
3년조: 김성규목사 방석진목사 김석률목사
2년조: 김수구목사 정군효목사 신동섭목사
1년조: 신원하목사 천재석목사 정권준목사

5) 인사부

부장: 이영근목사 서기: 한금석목사
3년조: 추경호목사 전종철목사 이영근목사
2년조: 조원근목사 김실구목사 한금석목사
1년조: 정진철목사 윤광중목사 강대수목사

6) 전도부

부장: 이동준목사 서기: 임재호목사 회계: 박동언장로
3년조: 김광섭목사 임재호목사 이현규목사 박민수목사 국종근목사
이종훈장로 윤운섭장로 정연배장로 전덕수장로
2년조: 이동준목사 김의겸목사 김정웅목사 이세훈목사 유모세목사
김충무장로 박동언장로 한영호장로
1년조: 김성은목사 유대식목사 이성일목사 박충성목사 김훈연목사
조남창장로 임현준장로

7) 행정법규부

부장: 박승하목사 서기: 강태원목사 회계: 강태원목사
3년조: 김정남목사 이종문목사 최경선목사 김원재목사 장경식장로
이명호장로 김종철장로 홍태표장로
2년조: 이수영목사 최경훈목사 이병철목사 임상열장로 이규남장로
박갑봉장로
1년조: 박승하목사 김동식목사 강태원목사 여진호목사 이장우목사
고동영장로 이삼권장로

※ 예결산위원회

위원장: 천재석목사 서기: 김석희장로 회계: 정종원장로
위원: 방석진목사 허창범장로 이광연장로

※ SFC지도위원회

위원장: 송재홍목사 서기: 정철기목사 회계: 홍주희장로
위원: 전종철목사 조원근목사 한금석목사 고동영장로

※ 공천위원회

노회장, 부노회장 2인, 서기, 시찰장 5인

7. 결의 사항

1) 공천부

- (1) 임원회에서 논의한 규칙 개정 건의 '신학교시부'와 '임사부'는 '신학부'와 '임사부'로 구분하기로 하다.
- (2) 신학부의 직전 장로 부노회장 배정은 삭제하기로 하고, 예결산 위원회에 장로 2인 증원하여 세우는 것을 예결산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직전 노회장+1).
- (3) SFC지도위원회에 임재호 목사 대신 전종철 목사를 넣기로 하다.
- (4) 총회상정위원회는 삭제하기로 하다.
- (5) 기록순서를 교육부, 사회복지부, 선교부, 신학부, 임사부, 전도부, 행정법규부 순서로 하기로 하다.

2) 선교부

- (1) 선교부장 추경호 목사가 제출한 전성인 무임목사의 노회 소속 파송 선교사 허락 청원건(브라질)은 취소.
- (2) 박요섭 목사의 선교사 인정 허락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3) 신학부

- (1) 수원시민교회 이준기 씨의 장로고시 추천 및 청원 허락
- (2) 안양일심교회 나호성, 황성수, 김승환, 유현수, 김경종, 장영완 씨의 장로고시 추천 및 청원 허락
- (3) 은성교회 정현구 씨의 장로고시 추천 및 청원 허락
- (4) 시흥성문교회 임현일 씨의 신학 입학 추천 및 청원 허락
- (5) 천산교회 박다솔 목사후보생의 신학 계속 추천 및 청원 허락
- (6) 광천교회 이진우 목사후보생의 신학 계속 추천 및 청원 허락
- (7) 밝은빛광명교회 김성찬, 장재현 목사후보생의 신학 계속 추천 및 청원 허락
- (8) 신일교회 김진태 목사 후보생의 신학 계속 추천 및 청원 허락
- (9) 장로고시 합격자: 한 범씨, 임한수씨(갈미), 송연선씨(은혜신일교회), 박문제씨(창대한교회)는 받기로 하다.

4) 인사부

- (1) 광교장로교회 정중현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허락
 - (2) 넉넉한교회 강태원 목사의 전임목사 청빙 허락
 - (3) 한마음교회 이성용 목사의 전임목사 청빙 허락
 - (4) 충훈교회 김원배 부목사 사임 허락
 - (5) 양문교회 김원배 부목사 청빙 허락
 - (6) 은성교회 장인호 부목사의 사임 허락
 - (7) 은성교회 장인호 부목사의 이명 허락(경남마산노회 제일문창교회)
 - (8) 한마음교회가 해당 지역 시찰로 가는 시기에 관한 건은 기억에는 있지만, 기록이 없으므로 직전 노회장이 나와 기록이 없는 부분은 사과하고, 본래 결의대로 3년 한시적으로 해 시찰 회에 맡기기로 하다.
- 부목사 사면 청원은 본인이나 당회장 모두 가능하지만 부목사 본인이 노회 회원이기에 당회장 허락을 받아서 청원하기로 하다.
 - 담임목사 외 목사 사면 및 이명 청원의 건과 노회 내 전임목사 사면 및 청빙 허락 청원의 건과 당해 연도에 목사 고시 응시하고자 하는 강도사 이명의 건과 상정안건 중 미진 안건은 노회 임원회에 위임하고, 협조 당회원 파송 청원의 건과 당회장 임면의 건과 위임국 조직은 해 시찰회에 위임하기로 한다. 단 임원 일부나 시찰부원 일부에게 재위임은 불가하다.

5) 전도부

- (1) 김영규 목사를 가칭 신명교회 전도목사로 파송 허락하기로 하다.

6) 행정법규부

- (1) 밝은빛광명교회 교회당 이전 허락(이전 장소: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11-2)
- (2) 밝은빛광명교회 교회 명칭 변경 허락(변경: 옥길교회)
- (3) 말씀전원교회 장로 2인 증원 허락
- (4) 김영규 무임목사가 제출한 교회 개척 허락
(개척 예정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01, 3층)
- (5) 시흥소망교회 교회 폐쇄 허락
- (6) 군포성안교회 장로 3인 선택 허락
- (7) 아름다운교회 교회주소변경 허락(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7 205호)하기로 하다.
- (8) 장로 피택 보고
수원시민교회 이준기
안양일심교회 나호성 황성수 김승환 유현수 김경종 장영완
은성교회 정현구

7) SFC지도위원회

- (1) 경기중부노회 SFC 대표 간사 대행 손지혜 인사하다.

8) 예결산위원회

- (1) 예산 비율을 2.6%에서 약 2.8%로 상향 조정하여 예결산위원회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9) 본회 안건

- (1) 규칙 제4조 6조 전도부와 관련된 수정의 건은 ‘군(軍)’을 삽입하고
 - (2) 노회 내 미자립교회 재정 차등 지원의 건은 전도부에 넘겨서 다음 노회에 보고 받기로 하고
 - (3) 서울 포럼에 참여는 자율적으로 하기로 하다.
- 장재형 관련 질의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서 크리스찬 투데이에 참여하고 있던 교단 관계자 3명이 경기중부노회에 문제를 통보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재확인 요청하기로 하다.

10) 신안건

- (1) 경기중부노회의 규칙보완을 위한 특별위원회 7인 선정을 임원회에 맡겨서 4월 노회까지 보완하기로 하다.

8. 내회 장소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9. 회의록 채택

중요 결정 사항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임원회에 맡겨서 채택하기로 하다.

10. 폐회에배 및 폐회

사회: 노회장 이준성 목사

기도: 부노회장 김동식 목사

본문: 딤후 4장 8절

제목: '바울이 가진 신앙처럼'

설교: 노회장 이준성 목사

축도: 노회장 이준성 목사

2019년 10월 15일

고신총회 경기중부노회 노 회 장 이준성 목사 ㉞
서 기 이근행 목사 ㉞

5-1차 임원회

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1시

장소: 좋은시민교회

참석: 이준성목사 김동식목사 이근행목사 이성일목사 송재홍목사 김성은목사
허창범장로 정종원장로 이광연장로

결의사항: 1) 예결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확정

2) 규칙 수정위원회 위원 7인 선정

: 김성규목사 김홍석목사 정균효목사 조원근목사
이성열목사 김석률목사 이근행목사

3) 크리스찬 투데이 장재형 관련 질의는 다시 하기로 하다.

4) 노회 내회 장소: 은성교회(안산시찰)

5) 회의록 채택

6) 제안된 은퇴목사와 담임목사의 탁구대회는 목동회에서 주
관하기로 하다.

2019년-2020년도 예산서

수 입		
항 목	예 산(2.752%)	비 고
이월금	9,129,558	
동부시찰	98,400,000	
서부시찰	72,500,000	
수원시찰	25,000,000	
시흥시찰	53,200,000	
안산시찰	25,400,000	
합계	283,629,558	

지 출			
	항 목	예 산	비 고
상회비(총회)	총회분담금	84,550,000	
	소계	84,550,000	총회/상비부,위원회
총회활동비	노회대표활동비	3,500,000	
	소계	3,500,000	
임원회	노회장활동비	1,000,000	
	임원회활동비	3,000,000	
	서기회계업무비	1,000,000	
	사무행정비	3,000,000	
	전임원격려비	500,000	기념뺏지
	소계	8,500,000	
교육부	주교연합	15,000,000	
	부교역자교육비	1,000,000	
	목회대학원	4,000,000	자립50%, 미자립100%
	활동비	500,000	
	소계	20,500,000	
사회복지부	은퇴목사	6,500,000	
	생활지원비	3,400,000	지완훈목사 120만*2 육도교회 100만
	활동비	500,000	
	소계	10,400,000	
선교부	고신선교대회	3,000,000	2020년

	한나선교회	2,400,000	임성용선교사 120만*2
	활동비	500,000	
	소계	5,900,000	
신학부	교육비	2,000,000	
	활동비	500,000	
	소계	2,500,000	
임사부	교육비	1,000,000	
	활동비	500,000	
	소계	1,500,000	
전도부	미자립교회지원비	65,000,000	
	군목지원비	5,400,000	유모세목사 45만*12
	군경목활동지원비	2,000,000	교단 군목교회방문
	활동비	500,000	
	소계	72,900,000	
행정법규부	활동비	500,000	
	소계	500,000	
SFC지도위원회	간사사역지원비	12,000,000	
	간사워크샵	500,000	
	겨울수련회	6,000,000	
	활동비	500,000	
	소계	19,000,000	
감사위원회	활동비	500,000	
	소계	500,000	
예결산위원회	활동비	500,000	
	소계	500,000	
공통지출	일본서부중회방문		격년제
	시찰운영비	10,000,000	동부150만, 서부150만 수원250만, 시흥200만 안산250만
	고려신대원후원비	6,000,000	
	고려여신원후원비	1,000,000	
	진중세례참여경비	1,000,000	총회주관
	수도권목사장로부부	3,000,000	체육대회
	총회총대여비	7,000,000	총회납부금포함

	노회자료집발행	1,000,000	정기노회2회
	정보통신비	1,000,000	노회홈페이지관리
	수도권신년하례	1,200,000	장로회주관
	신대원체육대회	1,000,000	신대원동창회
	남.여전도회지원	1,000,000	각 50만
	소계	33,200,000	
예비비	예비비	19,679,558	
	소계	19,679,558	
합계		283,629,558	

경기중부노회 신학부

(직인생략)

문서번호 : 제 5-1

수 신 : 개체교회 당회장

참 조 : 고시 해당자

제 목 : 목사, 장로 고시건

목사, 장로고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개체교회의 당회장께서는 참조하시고 해당자가 있으면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목사, 장로 고시의 일시 및 방법

- 1) 2020년 3월 9일(월) 오후 2시
- 2) 수원시민교회당(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5번길 26(구운동) 김성규 목사 시무 031)291-7767
- 3) 서류제출 마감일 : 2020년 3월 2일(월)
- 4) 제출할 곳 : 모든 서류는 노회 서기(이근행 목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노회 서기가 서류를 접수한 후에 신학부 서기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 5) 목사 및 장로 고시비 : 1인당 10만원(고시 당일 신학부 서기에게 접수).
- 6) 주의 : 당일 응시 과목에서 과락될 수도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목사 고시

1) 목사 고시자 제출서류

- ① 목사고시 청원 및 추천서(고시응시청원서, 목사청빙서, 당회장의견서)
- ② 이력서 - 자기소개서포함, 휴대폰번호 기록, 사진부착
- ③ 강도사 자격증 사본
- ④ 강도사 교육 수료증(총회신학부 주관 교육)
- ⑤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
- ⑥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⑦ 당회장 고과표

2) 목사고시 과목 및 담당자

- ① 논문 : 신원하 목사
- ② 성경주해와 설교 : 방석진 목사
- ③ 당일응시 과목
 - 목회학(정권준 목사) · 권징조례(천재석 목사)
 - 예배모범(김석률 목사) · 교회정치(김성규 목사)

- 설교 (7분 설교, 단 설교 원고 제출 및 응시 전 과목 합격자에 한함.
※ 참고 : 설교원고 제출은 25분 설교 분량 전체이어야 합니다).
- 면접 (제출 및 응시 전 과목 합격자 한함)
- 과목 담당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장로고시 및 교육

1) 제출서류

- ① 장로고시 청원 및 추천서(고시응시청원서, 당회장의견서)
- ② 이력서 - 휴대폰번호 기록
- ③ 소견서(본인)
- ④ 가족관계증명서 2부
- ⑤ 혼인관계증명서 2부
- ⑥ 성경통신대학 또는 교사통신대학 졸업자는 졸업증 사본 2부
- ⑦ 장로이명서 사본(전입 장로에 한함)

2) 장로고시 과목 및 담당자

- 성경(신동섭 목사) · 교리문답(천재석 목사) · 교회정치(김수구 목사)
- 면접(단, 필기고사 합격자에 한함) · 장로교육 (정군호 목사, 김석률 목사)
 - 전입 장로(지명투표자)는 면접만 실시함(전입 장로는 이명서 제출)
 - 성경통신대학, 교사통신대학졸업자 졸업장 제출시 성경, 교리 면제.
 - 과목 담당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광고사항

- 1) 서류제출 마감일을 넘겼을 경우에는 고시응시 자격이 자동적으로 차기 노회로 연기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 당회장은 공문을 받는 즉시 해당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달이 되지 않아서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신학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목사고시와 장로 고시자가 있는 교회는 신학부 서기에게 반드시 연락 해주시고 고시자를 파악하여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상 -

신학부 부장 정군호 목사
서기 김석률 목사

경기중부노회 규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경기중부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교회정치 제140조).

제3조 관할구역

본회는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소속 각 교회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한다.
2.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3. 무임목사는 발언권만 있는 회원이다.
4. 은퇴, 원로 목사는 언권과 투표권이 있으나 피선거권 및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교회정치 제43조4항).
5. 총대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으며(교회정치 제130조4항), 유고시에 한하여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 장로총대 선정기준: 각 당회는 시무목사 수에 따라 장로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파송한다(교회정치 제122조1~2항).

제5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6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교회정치 132조).

1.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4. 목사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5.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6. 강도사의 인허식 시행.
7.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8.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9.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여부 표시.

10. 교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11.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12.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관장.
13. 개체 교회 및 미조직 교회의 목사청빙 관장.
14. 개체 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 유익의 도모.
15.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
16. 총회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전정,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17. 총회제출의 노회상향 보고.
18. 총회총대 선출 및 총회지시 실행.
19.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제7조 노회의 각종 명부: 본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교회정치 정치134조).

1. 시무목사 명부
2.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선교사 명부
5. 무임목사 명부
6. 별세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원로목사 명부
9. 강도사 명부
10. 목사후보생과 전도사 명부
11. 개체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 명기)

제8조 회 집

본회의 정기노회 회집은 년 2회로 하되, 임시노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회집할 수 있다. 노회 예배 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헌금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의

제9조 정기회 : 정기회는 다음과 같이 회장이 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1. 일시: 10월 둘째 주일,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회집한다(단, 총회에서 일정의 일괄 변경 지시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2. 개회성수: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교회정치 제129조).

제10조 임시회

임시회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와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되

회집할 장소 및 시일과 안건을 7일전에 목사와 총대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 후 폐회한다(교회정치 제128조2항).

제11조 계속회

직전 노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 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결의를 거쳐 계속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장로 총대는 직전 노회의 총대로 한다.

제12조 비밀회

본회의 비밀회는 치리사건 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일반 안건

본회에 부의할 안건과 보고 건은 시찰을 경유하여, 개회 14일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긴급 안건

본회의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 안건 등은 본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 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발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제16조 회의석

본회 서기는 정기노회 임원석을 배정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정하여 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한다.

제17조 회의규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 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 따르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법규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 3 장 임 원

제18조 임원: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 | |
|------------|-----------------------|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
| 3. 서기 1인 | 4. 부서기 1인 |
| 5. 회록서기 1인 | 6. 부회록서기 1인 |
| 7. 회계 1인 | 8. 부회계 1인 |

제19조 감사

본회는 2인의 감사를 두되,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한다.

제20조 임원 (및 감사)의 임무: 본 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노회를 대표하며 본 노회가 행하는 업무 일체의 총책임을 진다.
2. 목사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장로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3. 서기는 노회의 각종 문부 및 서류와 인장을 관리 보관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 작성법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여 서기에게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노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을 출납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를 받은 후, 10월 정기노회에 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현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출납하되 회계의 현금보관 한도액은 임원회에 정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사는 본회 회계 재정업무 및 재정 후원기관을 감사한 후, 정기노회 시 보고한다(노회 산하기관의 회계업무는 담당부서에서 감사한 후 정기노회 시 보고한다).

제21조 임원의 선정

1. 본회 임원은 10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총회규칙과 같이 회장은 목사 부회장을 과반수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한다.
2. 회장이 과반수를 얻지 못할 시는 부회장 선출과 동일하다.
3. 부회장 투표시 2차까지 결정하지 못할 시는 3차는 다점자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고, 결원 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23조 임원회: 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보고.
2. 노회의 절차보고.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
4.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어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보고.
5. 제 규칙의 조사연구 보고 및 부목사의 사임 및 청빙.
6. 통계표를 작성하여 본회와 상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상비부 및 각급위원

제24조 상비부서 및 임무 : 본 노회의 회무를 유효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상비부를 두어 소관 사무의 집행 및 위촉된 안건을 심의 보고하고 각 부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부원은 각 부 20명 이내로 한다.

1. 교육부: 교회교육 일체를 주관하며 본 노회 산하의 교육기관(청장년연합회(CE), 주교연합회)을 지도한다.
2. 사회복지부: 구제사업, 교역자 은급, 순교자 유가족 및 사회사업 후생, 기관, 교인생활 지도를 맡는다.
3. 선교부: 총회세계선교회(KPM)와 협력하여 국외선교 사업을 연구계획, 계몽 관리한다.
4. 신학부: 신학문제, 신학생에 관한 일, 및 각종 고시(목사, 장로, 전도사)를 관장하며, 이를 심리하여 보고한다. 부원은 안수 후 15년이 경과한 목사로서 덕목과 지적 능력을 소유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5. 인사부: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련된 제반 사무를 심리하여 보고한다. 부원은 안수 후 15년이 경과한 목사로서 덕목과 지적 능력을 소유한 회원으로 구성하되, 목사와 선교사에 관한 인사행정사무를 관할하며 목사장립에 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한다.
6. 전도부: 노회 산하 전도 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전도사업(병원, 교도소, 경찰, 군인 등)을 연구 계획, 계몽 관리한다.
7. 행정·법규부: 장로에 관한 일과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에 관한 인사 행정 사무와 교회행정 사무를 관할하며 기타 노회에서 맡긴 일을 심리 보고한다. 본회의 규칙을 수정, 해석하고 또 당회록과 행정록을 검사하여 서면으로 본회에 보고한다.
8. 예·결산 위원회: 예산과 수지결산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25조 특별부와 임무: 전문성을 가진 약간 명으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SFC지도위원회: SFC 지도와 학원전도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일과 소속 간사를 지도 감독한다.

제26조 각부 및 위원회 임원: 각부 및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임무를 정하여 소관사항을 처리하게 한다.

1. 부장(위원장): 필요시 부회(임원회)를 소집하며 이를 사회한다.
2. 서기: 부(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노회시 행정법규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부(위원회)소관 재정을 출납하며 10월 정기노회시 감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정기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회장, 부회장,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각부 위원은 노

회 개최 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10월 정기노회에서 확정하되 공천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각 상비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년조만 선정한다.
- 2) 상비부원은 1인 1부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2개 부서까지는 겸임할 수 있다.
2. 광고위원: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노회 기간 중 광고의 책임을 맡는다.
3. 안내위원: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노회 기간 중 안내질서 및 회원의 출결사항을 살핀다.

제28조 시찰부 : 개체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구역 단위로 다음과 같은 시찰부를 둔다.

1. 구역 : 본 노회는 5개 시찰을 둔다.
 - 1) 동부시찰 : 광명시, 과천시, 안양 동안구, 의왕시
 - 2) 서부시찰 : 군포시, 안양 만안구
 - 3) 시흥시찰 : 시흥시
 - 4) 안산시찰 : 안산시
 - 5) 수원시찰 : 수원시
2. 구성 : 각 시찰별로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 단위로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조직한다. 단 시찰부원은 한 당회에서 장로 2명을 초과 할 수 없다.
3. 임무 : 시찰부는 해 시찰 산하 교회를 시찰하고 노회에 보고할 것이며 시찰부를 소집하여 노회에 상정될 안건 및 서류를 심사하여 경유시켜야 한다. 단 청빙조회중인 회원의 사임서 및 이명청원서는 예외로 한다. 시찰부는 해시찰 산하교회의 형편을 시찰하고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고, 처리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교회정치 제 139조6항).

제 29조 특별위원

본회가 필요시 7인 이내로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해 시찰부원은 수습위원은 가능하나 전권위원은 될 수 없으며, 특별부와 정기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0조 노회 소속기관 (정치156~157조)

1. 본 노회가 인정하는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주일학교연합회
 - 2) 학생신앙운동(SFC)
 - 3) 청장년연합회(CE)
 - 4) 남전도회연합회
 - 5) 여전도회연합회
2. 본회 산하 연합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회칙, 주요 사업

계획)을 받아야 한다.

3. 노회 소속기관은 노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매년 임원조직, 사업, 예결산 등을 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6. 소속기관 및 기관이 본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총대

제 31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총대 유고시를 대비하여 약간 명의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선정한다.

제32조 총대모임

총대모임에서는 총회와 본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 33조 회계연도

1. 본회 회계연도는 가을노회 회집 익일부터 차기 가을노회 회집 당일까지로 한다.
2. 본회 경상비는 상회부담금 및 기타 연보를 노회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예결산위원회)는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조 부담금

1. 각 개체 교회의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주일 및 주정헌금, 일반감사헌금, 십일조헌금)에 의하여 배정하되 그 비율은 노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 부담금의 교회별 상하한 금액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본회의 부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회로 배정하고, 각 시찰회는 4월 정기노회 시까지 5분의 3이상을 본회 회계에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대 선출 및 언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5조 회원여비

1. 본회의 정기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시무교회가 부담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 교회의 부담으로 하되 총회의 지시에 의한 소집 및 특별한 경우는 임원회 결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치 않을 수 있다.

2. 은퇴목사의 노회 및 총회 자문위원으로의 참석 여비는 본회에서 부담한다.

제 7 장 부 칙

1조(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고신총회 헌법(교회정치, 권징조례 등)에 위배되는 규칙은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없다.

2조(공문서식): 본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¹⁾ 총회 공문서 규정에 의한다.

3조(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7년 10월17일 제정²⁾/ 2018.4.10., 2019.10.15. 개정)

1)각종 서식은 고신총회 또는 본 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2)고신총회에서 제시한 표준 노회규칙을 노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채택하였음.

제5회 경기중부노회 요약	
발 행	노회장 이 준 성 목 사
편 집	서 기 이 근 행 목 사
발행일	2019년 10월 15일